

이 자료는 지난 2월 25일 관세청에 제출한 건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편집자 주 -

체선료 확정에 따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제도 개선 및 납부세액과 환급액의 상계 건의

대한석유협회

서 유업계의 특성상 선적항에서 발생하는 체선료 및 Cargo 관련 기타비용(Tax, 항로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등)의 경우 통상 3~5개월 후에야 그 금액이 확정되어 통관이후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선료 및 기타비용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징수하는 현행 관세 납부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함.

또한, 최소한 체선료 확정에 따른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대해서도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액과 상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1. 원유 수입시 선적항에서 발생하는 체선료의 경우 통상 국제적인 관행이 선적후 90일이내에 선박회사가 선박이용 회사에 체선료를 청구하며, 이후 선박회사와 선박이용 회사간에는 기후, 현지 사정 등 체선료 발생의 귀책사유에 대한 상호

협상 등을 통하여 최종 체선료 금액을 확정함에 따라, 빨라야 선적후 3~4개월 후에 체선료 금액이 확정되며 경우에 따라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존재함.

2. 따라서, 관세법상의 가산세란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징벌적인 부과금인 바, 우리 업계와 같이 통관후에 체선료 금액이 확정되고,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 상황에서 체선료 확정에 따른 추가 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 채권의 확보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3. 또한, 지난 해에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1-20호)"가 개정됨에 따라 세액경정의 경우 추가납부할 세액에서 추가로 관세환급할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이에, 우리 업계는 수입하는 화물(원유 등) 중 선적항에서의 체선료 발생화물은 체선료에 대한 금액 확정 즉시 관세법규에 의해 수정신고를 해오고 있는 바, 수정신고 한 후 추가 납부할 관세에 대해서도 동 고시 “제7-1-2조(부족세액 징수와 환급의 상계)”의 적용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해 개정된 관세청고시 중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2조(부족세액 징수와 환급의 상계)】의 “관세 등 부족세액을 징수할 ~”이란 조문이 세액경정시에만 환급액과 상계하여 관세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수정신고시에 추가 납부할 관세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임.

이에, 동 고시의 취지나 목적으로 볼 때 성실 납부업체인 우리 업계 및 전술한 구조적인 문제를 감안할 경우 동 고시의 확대운용 또는 재 개정을 통하여 수정신고시 추가납부 할 관세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액과 상계하여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관세환급의 효과를 줌으로써 수출촉진과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줄것을 건의함. ㉞

관세청고시 개정건의(案)

현행	개정 건의(案)
<p>○ 관세청고시 제2001-20호 :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련 조문</p> <p>제7-1-2조(부족세액 징수와 환급의 상계)</p> <p>① 관세 등 부족세액을 징수할 물품에 대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징수할 관세 등의 본 세액과 환급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급할 세액이 있거나 부족세액 징수로 인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 중 본 세액은 서로 상계하고 환급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만 고지할 수 있다.</p>	<p>(新設)</p> <p>③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때에도 추가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하고 가산세만 납부하거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만 납부할 수 있다.</p>
<p>○ 문제점</p> <p>지난 해 개정된 관세청고시 중 【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1-2 조(부족세액 징수와 환급의 상계)】의 “관세 등 부족세액을 징수할 ~” 이란 조문이 세액경정시에만 환급액과 상계하여 관세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수정신고시에 추가 납부할 관세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임.</p>	<p>○ 개정요청 사유</p> <p>동 고시의 취지나 목적으로 볼 때 당사와 같은 성실 납부업체에 대해서는 동 고시의 확대운용 또는 재개정을 통하여 수정신고시 추가납부 할 관세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액과 상계하여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관세환급의 효과를 줌으로써 수출촉진과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p>